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25,441,000	36,763,230
일반회계	1,089,935,000	32,698,050
특별회계	135,506,000	4,065,180
공기업특별회계	113,216,000	3,396,480
상수도사업	64,800,000	1,944,000
하수도사업	48,416,000	1,452,480
기타특별회계	22,290,000	668,700
의료보호기금사업	2,328,000	69,84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977,000	89,31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459,000	133,77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651,000	49,530
주택사업	347,000	10,4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8,462	3,254
주차장설치사업	606,000	18,18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93,538	5,806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17,000	15,510
학교급식지원센터	9,103,000	273,09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636,35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